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주택과-33183
등록일자	2015.8.31.
결 재 일 자	2015.8.31.
공개구분	부분공개(7)

주무관	전략정비팀장	주택과장	도시환경국장	
이석태	최군호	정한호	08/31 배 경섭	
협조자				

-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 -

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및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(안) 입안



2015. 8.

강 남 구 (주 ^{택 과)}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•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(제안서의 처리 절차)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(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)에 의거 주민제안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·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주민
분 야 별 검토사항 (계속:) (신규: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서울시 공통사무임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

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및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(안) 입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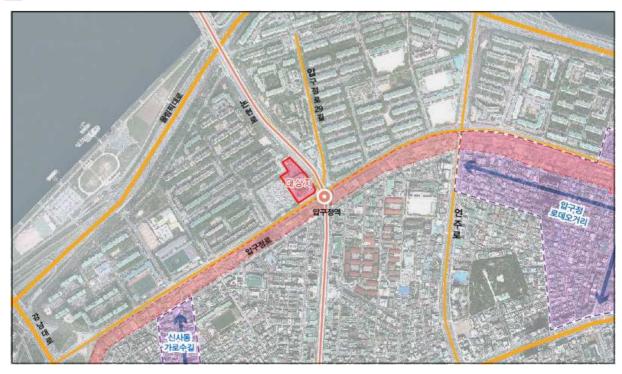
우리구 압구정동 429번지 일원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관련하여 주민(토지소유자) 들이 주변지역 여건변화(가로수길, 압구정로데로거리, 역세권 형성)등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(변경),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을 제안한 사항임

I 관련법규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(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(지구단위계획의 내용)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(제안서의 처리절차 등)
- 주택법 부칙<법률 제6916호, 2003.5.29.> 제9조(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

Ⅱ 제안 대상지 현황

- 📕 위 🥏 치 : 강남구 압구정동 429번지 일원
- 구역면적 : 10,473.1㎡(특별계획구역)
- 도시계획사항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역사문화·일반미관지구, 아파트지구
- 위 치 도



Ⅲ 추진현황

- 1976.08.21.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정
- 1977.03.29.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
- 1980~2004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(7회)
- 2014.06.19.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
- 2014.12.22.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압구정로변 지구 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제안
- **1** 2015.06.10. 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(사전타당성 자문)
 - 자문결과 : 조건부 동의
 -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에 포함 추진하는 방안과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 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
 -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되,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공공기여 방안 등 구체적인 지구 단위계획 내용 검토

IV 제 안 내 용

제안사유

- 주변지역 여건번화(가로수길,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특화거리, 역세권 형성)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-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동시 진행

■ 지구단위계획(안)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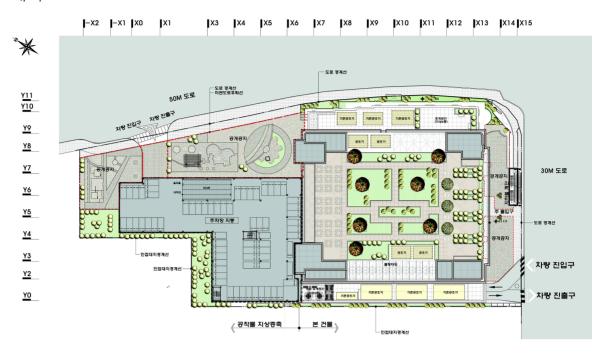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·용도지구 : 변경없음

○ 도시기반시설 : 변경없음

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(안)

	н	드버네됩고서 리기(시)	제무대에게취	건축계
	분	특별계획구역 지침(안)	세부개발계획	획(안)
87	지역	•제3종일반주거지역	●제3종일반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
	건폐율	•50% 이하·	•50% 이하	49.99%
밀도	용 적률	 ●기준(허용)용적률: 250% 이하 ●상한용적률 - 기부채납시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- 지하철 출입구, 환기구 개설싶 - 공개공지 추가지정시 법적용적률의 1.2배 이내 - 녹색건축물 및 건물에너지 효율 인증 	●기준(허용)용적률: 250% 이하 ●상한용적률 - 공개공기추가장시법적용적률의 1.2배이내 - 녹색건축물 및 건물에너지 효율 인증	289.28% ※상한용적률 -공개공지 : 26.33% -녹색건축물 : 20%
최고	<u>!</u> 높이	●50m 이하(가로구역별 최고높이기준 적용) ●건축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변화있는 sky-line 유도	●50m 이항	43.7m
건축물 용도	불허 용	•제3종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허용 이외 용도 •제3종일반주거지역안의 허용 건축물 중 다음용도 - 단독주택, 공동주택(주거복합 제외) -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(청과물관련시설) - 창고시설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-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- 역시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불허용도	좌 동	-
	권장 용도	 ●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 ●판매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5항」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완화) ●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	 ●판매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5항」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완화) ●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	도입용도 : 판매시설, 업무시설, 근린생할시설
건축선	건축 한계선	●대상지 남측 3m, 동측 : 3m (역사문화미관지구 12m이내 층수제한 : 4~6층)	●대상지 남측 도로변 : 3m, 동측 도로면 : 3m	남측 3m 동측 3m
대지내 공지	공개공지	●압구정역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조성	●압구정역, 논현로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	압구정로, 논현로 주변 (1,811.07㎡)

○ 배치도



○ 조감도



집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내용

○ 지구현황

- 지 구 명 : 압구정 아파트지구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, 청담동 일대

- 면 적 : 1,046,148.0 m²

○ 토지이용계획 변경(안)
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고
	면적(㎡)	비율(%)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합 계	1,046,148.0	100.0	1,035,674.9	100.0	감)10,473.1
주구중심	42,839.0	4.1	32,365.9	3.1	감)10,473.1
분구중심	6,751.0	0.6	6,751.0	0.6	
주택용지 주택용지	635,257.0	60.7	635,257.0	61.3	
학교용지	137,535.7	13.2	137,535.7	13.3	
	102,588.0	9.8	102,588.0	9.9	-
도로용지	107,209.0	10.3	107,209.0	10.4	
공원 및 주차장용지	13,968.3	1.3	13,968.3	1.4	





V 검토의견

- 입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검토
 -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절차 이행토록 요청
-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결정(안) 검토
 - 신청인은 압구정동 429번지 일원에 대해 주변지역 여건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아파트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주민 제안한 사항으로
 - 관련부서 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추가 검토토록 하고,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절차를 추진함이 타당함

VI 향후 추진계획

- 관련부서 협의 및 열람공고 실시
- 협의 및 열람공고 이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,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